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”로 한다.

제2조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정원제외) : 1,537 명
2.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820 명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1 명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7 명

---

총 계 : 2,455명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 본청, 의회사무처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